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3.

발 의 자 : 박 정 · 황명선 · 김정호
김태선 · 김영환 · 허종식
안호영 · 이훈기 · 이용우
윤후덕 의원(10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.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,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,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.

이에 국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, 공공부지의 재

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,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6조제5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01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5항 중 “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”를 “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~ ④ (생략)	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<u>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-----.</u>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